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김선교 · 김소희
김미애 · 진종오 · 안철수
주호영 · 이만희 · 최은석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%(100만원 한도)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,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.

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으로 2025년 상반기 내수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행시기가 약 4개월에 불과했지만 내수 진작에 기여함.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2025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, 개소세 감면 종료시 내수 급감도 우려되는 상황임.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개소세 감면연장이 필요함.

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(안 제109조의2제1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“2014년 12월 31일”을 “2017년 12월 31일”로,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, 도·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, 재고물품확인서,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

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,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9조의2(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<u>2014</u> <u>년 12월 31일</u> 이전에 신규등록 된 자동차(이륜자동차와 「자 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매 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 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 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노후 자동차”라 한다)를 <u>2024년 12</u> <u>월 31일</u> 현재 소유(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고 있는 자(법인을 포함 한다)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 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 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 내에 승용자동차[「자동차관리 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 차(新造車)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 차에 한정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신차”라 한다]를 본인의 명의 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	-제109조의2(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 --- ----- <u>2017</u> <u>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12월</u> <u>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 면한다. 이 경우 노후자동차 1 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 별소비세를 감면한다.	----- -----. -----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